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2046
----------	------

제출년월일 : 2010.11.19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정이유

- 우리시의 특성이 반영된 기후변화 시책추진
 -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추진의 정책 기반 구축
 - 기후변화대응 기금 조성에 필요한 근거 마련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종합관리
 - 기후변화대응 관련업무의 통합관리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
- 주민의 쾌적한 녹색생활 영위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녹색생활 운동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확보

주요내용

- 가. 안산시·사업자주민의 책무(안 제4조 내지 6조)
- 나. 안산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10조 및 제11조)
- 다.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및 기후변화대응기금 조성(안 제13조)
- 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안 제14조)
- 마.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안 제15조)

제정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있음(위원회 참석수당 및 민간보조금 등)

사전예고(결과) : 의견있음

- 입법예고 : 2010. 10. 27. ~ 2010. 11. 5. (10일간)
- 녹색성장과 : 기후변화대응 기금조성 관련조례 제정에 필요한 근거 마련
 - 안 제13조제7항 신설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7.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을 말한다.

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0.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시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시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시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시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시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시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중장기 비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시는 필요한 물품의 구입 시 친환경제품·저탄소 제품을 구매하거나 저탄소 실천 매장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의 예산이 보조되는 1,000명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탄소 배출량이 상쇄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시킨다.

③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과 정책을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지방추진계획과 조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녹색성장 추진

제8조(지방추진계획 수립·시행 협조)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하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에 관한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점검·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및 제10조의 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점검·평가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조정하기 위한 안산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안산시 의회 의원, 관련 기관·협회 및 시민단체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유고 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녹색성장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녹색성장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개발 및 자문

2. 지역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자문
3.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4.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3조(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 ② 시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⑤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시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사업자 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관계 법령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⑦ 시는 신·재생에너지시설, 녹색 기술·산업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추진

하기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호에 의한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행 연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시장은 시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 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2.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3. 산지의 자연생태 및 녹지 보존
4.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및 감축 활동
5.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6. 지역 슬로(Slow)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7.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사용과 보급 활동
8. 친환경 재활용시스템 구축과 에너지 복지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제17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18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시,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시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19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시장은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 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녹색성장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담당·팀장 직위성명	기후변화대응담당 백현숙
	담당자 성명·전화	최상권 (행정 2927)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046
----------	------

제안년월일 : 2010. 12. 10.

제안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령에 명시된 내용의 중복 작성을 지양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함.

2. 주요 골자

- 시의 책무 중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심의로 변경함(안 제11조).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수정안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시의 책무) 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기능) 제1호의 “자문”을 “심의”로 하고, 제2호의 “자문”을 “심의”로 한다.

조문대비표

발의안	수정안	비고
<p>제4조(시의 책무)①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② ③ ④ ⑤ ⑥ ⑦</p> <p>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p> <p>1.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개발 및 <u>자문</u></p> <p>2. 지역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수립 및 실천에 관한 <u>자문</u></p>	<p>제4조(시의 책무) <u>삭제</u></p> <p>① ② ③ ④ ⑤ ⑥</p> <p>제11조(기능)</p> <p>1. <u>심의</u></p> <p>2. <u>심의</u></p>	